

<p>다음은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利子率, 延滯利子를 포함한 것입니다. 適用基準을 金融通貨委員會에서 決定告示한 �利子率에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 教育金庫 利子率로 變更하고, 公有財產審議會의 委員中 社會教育課長을企劃豫算擔當官으로 變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當委員會에서 審查한 바 1993年 10月 28日 韓國銀行의 金融通貨委員會에서 金融機關의 與·受信金利를 自由與·受信金利로 전환함에 따라 利子率, 延滯利子 포함한 것입니다. 利子率의 적용기준을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 教育金庫로 指定된 金融機關의 家計貸出金利로 變更하고, 公有財產審議會構成委員中 社會教育課長을 審議權限 및 擔當業務와 관련이 많은企劃豫算擔當官으로交替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Case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p> <p>다음은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漢江女子中學校를 閉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當委員會에서 審查한 바 永登浦區 楊坪洞 4街 315番地에 所在한 漢江女子中學校는 高校敎育體制改編計劃에 따라 實業系高校收容施設擴充을 위하여 同校를 閉校하고 電子工藝高等學校로 昇格轉換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Case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p> <p>보다 자세한 内容은 배부하여 드린 審查報告書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p> <p>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當委員會에서 執行部側의 자세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다음 關聯法規와 條例를 면밀히 살피고, 또한 深度 있는 質疑答辯을 통하여 신중한 審查를 한結果, 전반적으로 必要性和 合理性가 있다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一括報告드린 대로 可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p>	<p>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李永輔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文化敎育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特別市Name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議事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이상 5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hr/> <p>(參照)</p> <p>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서울특별시敎育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敎育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p>
--	--

<p>“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p>[별표]의 일반적 4(5)급란 및 5급란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반적 6급란중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일반적 7급란중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p> <p>제1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p>제2조(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p> <p>제21조제2항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에”로 한다.</p> <p>제26조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p>	<p>중은행”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 중학교(남부)중 “한강여자중학교”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17.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b></p> <p>(16時 10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7項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権 3打)</p> <p>都市整備委員會 崔相燦議員님 나오셔서 審查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崔相燦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都市整備委員會所屬 崔相燦議員입니다.</p> <p>本議員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한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p> <p>이번에 上程된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은 지난 93年 8月 9日字 建築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現行條例를 上位法인 建築法施行令과一致시키도록 하고 또 그간 條例運營上 現況과 맞지 않는 問題點이 있어 이를 補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現行條例 中 서울市 建築審議委員會의 審議 對象이 11層 이상으로서 1萬m<sup>2</sup> 이상의 경우만 審議하게 되던 것을 적절한 都市美觀을 維持하기 위하여 11層 미만의 建</p>
--	---